

광진구의회 정비 조례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용역



광진구의회
Gwangjin-gu Council

광진구의회 정비 조례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용역

제출문

광진구의회

귀하

이 보고서를 ‘광진구의회 정비 조례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 |
|-------|----------------|
| 연구기관명 | 나라살림연구소 |
| 연구책임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연구원 | 김민수 책임연구원 |
| 용역발주처 | 광진구의회 |

연구보고서 참고내용

‘광진구의회 정비 조례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용역’

| | |
|------|-----------|
| 인쇄 | 2022년 12월 |
| 발행 | 2022년 12월 |
| 기타내용 | |
| 발행처 | 나라살림연구소 |

목 차

| | |
|----------------------------------|----|
| I. 연구개요 | 1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
| 1) 연구내용 | 2 |
| 2) 연구방법 | 3 |
| 3. 연구범위 및 기간 | 4 |
| 1) 연구범위 | 4 |
| 2) 연구기간 | 4 |
| | |
| II. 자치법규의 개념과 현황 | 5 |
| 1. 자치법규의 개념 | 5 |
| 1) 자치법규 개념 | 5 |
| 2) 자치법규 종류 | 5 |
| 3) 자치법규 기능 | 6 |
| 가) 지역 내 기능 | 6 |
| 나) 국가적 기능 | 7 |
| | |
| III. 광진구 조례 현황 분석 | 8 |
| 1. 광진구 조례의 구성 | 8 |
| 1) 편장의 구분 | 8 |
| 2. 필수조례 정비 현황 및 분석 | 13 |
| | |
| IV. 우선정비 조례 현황 및 개정 | 29 |
| 1. 우선정비 조례 현황 및 분석 | 23 |
| 1) 분석 기준 | 23 |
| 2) 우선정비 조례 현황 | 24 |
| 2. 우선정비 조례 개정방안 제시 | 26 |
|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 | 26 |
| 2) 현행 조례의 내용적 보완 필요성 제안 | 34 |

| | |
|---------------------------------|-----------|
| 가)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34 |
| 나)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37 |
| 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40 |
| 라)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 | 42 |
| 3) 폐지법령 준용 조례 개정 | 46 |
| 4) 그 외 조례 규정사항의 준수 | 48 |
| V. 광진구 신규조례 제정 제안 | 50 |
| 1. 우수조례 선정 | 50 |
| 1) 우수조례 선정 사례 분석 | 50 |
| 가) 광역자치단체의 우수조례 선정 사례 | 51 |
| 나)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 54 |
| 2) 최근 조례 제정 특징 | 57 |
| 2. 광진구 신규조례 제안 | 59 |
| 1) 기획행정위원회 | 59 |
| 가)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 59 |
|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 | 64 |
| 다)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65 |
| 2) 복지건설위원회 | 68 |
| 가)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 | 68 |
| 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71 |
| 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75 |

표 차례

| | |
|---|----|
| [표 1] 자치법규 종류 | 5 |
| [표 2] 자치법규의 구분 | 6 |
| [표 3] 광진구 조례의 편 현황 | 8 |
| [표 4] 광진구 조례의 편장 현황 | 9 |
| [표 5] 광진구 조례의 부서별 현황 | 11 |
| [표 6] 필수조례 정비 예시 | 13 |
| [표 7] 광진구 필수조례 정비 미개선 현황 | 14 |
| [표 8] 회기 운영 조례의 광진구의회와 이천시의회 비교 | 19 |
| [표 9] 서울시 자치구별 필수조례 정비율 비교 | 21 |
| [표 10] 광진구 조례 제개정 년도 현황 | 24 |
| [표 11] 광진구 제개정된지 오래된 조례 목록 | 25 |
| [표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27 |
| [표 13]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27 |
| [표 14] 국어기본법 내 공문서 작성 규정 | 28 |
| [표 15] 정비대상 15개 선정용어 목록 | 28 |
| [표 16] ‘총괄’로 표현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 29 |
| [표 17] 통할로 규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비교 | 30 |
| [표 18]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 30 |
| [표 19] 광진구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제안 | 34 |
| [표 20]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중 반려동물 관련 조항 | 35 |
| [표 21]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중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조항 | 36 |
| [표 22]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 지정 조문 | 36 |
| [표 23] 충북 청주시 옥외행사 조례 개정안 | 38 |
| [표 24] 공주시 옥외행사 조례 중 정의 조문 개정내용 | 39 |
| [표 25] 공주시 옥외행사 조례 중 관계기관 협업에 대한 개정 내용 | 40 |
| [표 26] 공주시 옥외행사 조례 중 예산지원에 관한 개정내용 | 40 |
| [표 27] 서울 금천구 주민자치회 조례 중 유예 규정 | 41 |
| [표 28] 서울 도봉구 주민자치회 조례 중 적용례 | 41 |
| [표 29] 서울 성북구 주민자치회 조례 중 경과조치 | 41 |

| | |
|--|----|
| [표 30] 에너지법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 규정 | 42 |
| [표 31] 에너지법 내 에너지복지 정책 규정 | 42 |
| [표 32]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복지 정의 | 44 |
| [표 33] 서울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구의 책무 | 44 |
| [표 34] 서울 강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 백서 포함 사항 | 45 |
| [표 35] 서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복지사업 규정 조문 | 45 |
| [표 36] 서울 본청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준용 법령 | 48 |
| [표 37] 조례 규정사항 준수 점검 필요 조례 목록 | 48 |
| [표 38] 자치단체 우수조례 선정 기준 | 51 |
| [표 39] 서울시민 선정 서울시의회 우수조례 30선 중 상위 10개 | 51 |
| [표 40] 광주시민 선정 광주시의회 우수조례 20선 | 52 |
| [표 41]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전문 | 60 |
| [표 42] 연도별 보이스포싱 범죄 현황 | 64 |
| [표 43]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 내용 | 66 |
| [표 44] 성남시 일하는 시민 조례 주요내용 | 67 |
| [표 45] 긴급복지지원법 내 자치단체의 위기상황 발굴 관련 조문 | 68 |
| [표 46]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 중 주요내용 | 70 |
| [표 4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중 | 70 |
| [표 48] 서울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중 포상금 지급 근거 71 | |
| [표 49] 발달장애인법 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73 |
| [표 50] 발달장애인법 내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관련 조문 | 74 |
| [표 51] 발달장애인법 발달검사 시행 관련 개정안 내용 | 74 |
| [표 52] 스토킹범죄 검거 현황 | 75 |
| [표 53] 스토킹처벌법 내 목적 규정 | 76 |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로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상호 견제의 원리에 따라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구현 및 달성을 위해서는 자치법규인 조례가 자치단체의 정책환경과 시의성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의 하위체계로서 사회변화 및 상위법령의 부합 등 체계정당성을 확보해야만 실질적 입법 수단으로 영향력 및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지난 10년간 개정이 없었던 자치법규 2,444건을 내년 말까지 일제 정비하도록 자치단체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유사 조례의 통폐합, 사문화된 조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민선 8기 출범으로 인한 지역 권력의 변화로 지방의회는 혁신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시민 불편 초래, 복잡한 행정절차 요구, 상위법령 부합 등 그간의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함
- 광진구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419건의 자치법규가 있으며 이 중 323개의 조례와 96건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음
- 유사 규모의 타 자치단체 자치법규와 분야별, 주제별 비교 분석을 통해 광진구 자치법규의 특성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미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광진구의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정합성을 향상하도록 해야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광진구 조례의 분야별 현황 및 특징 분석

- 광진구 자치법규를 분야별, 부서별, 주제별 분류를 통한 현황 파악
- 광진구 자치법규 키워드 중심 분석을 통한 특징 분석
-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

□ 우선 정비대상 조례 점검

- 2022년 6월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제개정되지 않았거나 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으로 우선 정비대상 조례 선정
 - 상위법령 법령 재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이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여부
 - 상위법령 위반 조례 :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서 불허하는 등 상위법령을 위반 여부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 여부
 -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 :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명무실화된 조례 여부
 -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 사업종료, 재단 해산, 특별회계 폐지, 위원회의 미구성 등으로 적용 대상이 없는지 여부
 - 쉬운 용어로의 정비 : 알기 쉬운 용어, 법률 제명 띄어쓰기 등 기타사항
 - 타 자치단체와 비교 : 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비교하여 조례 정비

□ 정비대상 자치법규 분석 및 개정방안 제시

- 자치법규 분석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 문제점 발견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광진구 자치법규의 정합성, 적법성 및 민주성 등을 향상
- 서울시 자치단체와 광진구 조례를 비교 분석을 통해 광진구 조례 정비방안을 마련
- 의회 및 부서와 협의를 통한 부서별, 상임위별 조례 개정방안 제시

2) 연구방법

□ 법령 제공 홈페이지 활용 조례 정비현황 분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를 활용
- 현행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필수조례 정비사항 등을 확인
- 전국 자치단체의 최근 조례 제개정 현황 분석을 통해 우선정비 조례 연구

□ 조례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분석

- 광진구 조례 부서별, 분야별 분류를 통해 조례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서울특별시 내 유사 규모의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
- 2022년 6월 이전 재개정된 조례 대상 우선 정비 조례 선정
- 우선 정비 조례 문제점 분석 통해 개정 시안 제시

3. 연구범위 및 기간

1)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간적 범위 : 2022년 6월 이전 제개정된 조례 전체
- 내용적 범위 : 광진구 조례

2) 연구기간 :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II. 자치법규의 개념과 현황

1. 자치법규의 개념

1) 자치법규 개념

□ 헌법 내 자치사무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이라는 지방자치단체 세 가지 권한을 의미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서 자치법규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역 내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를 의미함

2) 자치법규 종류

○ 법제처의 자치법규입안길라잡이는 자치법규를 자치법규 정립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함

- 넓은 의미의 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

[표 1] 자치법규 종류

| 구분 | 내용 | 관련 규정 |
|----|--|------------------------------------|
| 조례 |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함 | 지방자치법 제2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25조제1항 |

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로 구분됨. 또한 조례 제정의 재량 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위임조례'로 구분됨

[표 2] 자치법규의 구분

| 구분 | | 관련 규정 |
|----------|-------|---|
| 법령 위임 | | |
| | 위임조례 | 개별 법령의 위임에 의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및 벌칙을 정하는 조례 |
| | 자치조례 |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 |
| 조례 제정 재량 | | |
| | 필수조례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조례 |
| | 임의 조례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해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조례 |

출처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규칙'과 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 '직권규칙'으로 구분됨

3) 자치법규 기능

가) 지역 내 기능

- (주민 욕구의 실현) 자치법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이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킴
- (지역진흥의 수단)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 등 지역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자치법규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음
- (자치행정의 근거·지침 제시)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제할 때 이를 법적인 근거 필요. 자치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

- (주민의사의 유도) 주민의 의사와 운동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함

나) 국가적 기능

- (국가 법제의 종합 및 보완 기능) 국가적 사업과 정책에 있어 법과 법의 연결을 통한 종합화하고 적절한 분담 관계로의 상호보완적 기능.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조례는 전국으로의 확산이 가능해지고 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음

III. 광진구 조례 현황 분석

1. 광진구 조례의 구성

1) 편장의 구분

□ ‘복지’ 편이 70개의 조례로 21.7%를 차지

- 통상 조례의 편장의 구성을 보면 부서별 형태와 주제별 형태로 구분되어 조례를 구분하는데 광진구는 주제별로 조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별 구성 형태를 띠고 있음
- 조례의 편장이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부서가 관리하는 조례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이 바뀔 때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광진구 조례는 모두 11편 4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에서 가장 많은 조례가 있는 편은 ‘제6편 복지’로 70개의 조례가 있어 21.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어 ‘제4편 행정’이 69개로 21.4%, ‘제5편 기획경제’가 51개로 15.8%, ‘제7편 안전환경’이 38개로 11.8% 순으로 많음

[표 3] 광진구 조례의 편 현황

| 편 | 개수 | 비중 |
|----------|----|-------|
| 제1편 지방의회 | 20 | 6.2% |
| 제2편 감사 | 10 | 3.1% |
| 제3편 홍보 | 3 | 0.9% |
| 제4편 행정 | 69 | 21.4% |
| 제5편 기획경제 | 51 | 15.8% |
| 제6편 복지 | 70 | 21.7% |
| 제7편 안전환경 | 38 | 11.8% |
| 제8편 미래도시 | 11 | 3.4% |

| 편 | 개수 | 비중 |
|-----------|------------|---------------|
| 제9편 교통건설 | 16 | 5.0% |
| 제10편 보건소 | 29 | 9.0% |
| 제11편 동행정 | 6 | 1.9% |
| 합계 | 323 | 100.0% |

- 광진구 조례의 장의 구성을 보면 ‘제1편 지방의회’와 ‘제2편 감사’는 장이 없으며 장이 없는 편은 편을 기준으로 조례의 개수를 비교하였음
- ‘제6편 복지’의 ‘제5장 아동청년’과 ‘제5편 기획경제’의 ‘제1장 기획예산’이 각 21개(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1편 지방의회’가 20개, ‘제4편 행정’의 ‘제1장 총무’와 ‘제2장 자치행정’이 18개(5.6%) 순으로 많았음

[표 4] 광진구 조례의 편장 현황

| 편 | 장 | 개수 | 비중 |
|----------|-------------------|----|------|
| 제1편 지방의회 | | 20 | 6.2% |
| 제2편 감사 | | 10 | 3.1% |
| 제3편 홍보 | 홍보 | 3 | 0.9% |
| 제4편 행정 | 제1장 총무(제1절 서무) | 7 | 2.2% |
| | 제1장 총무(제2절 인사) | 5 | 1.5% |
| | 제1장 총무(제3절 복무) | 3 | 0.9% |
| | 제1장 총무(제4절 급여) | 2 | 0.6% |
| | 제1장 총무(제5절 친절) | 1 | 0.3% |
| | 제2장 자치행정 | 18 | 5.6% |
| | 제3장 민원여권 | 3 | 0.9% |
| | 제4장 문화체육 | 14 | 4.3% |
| | 제5장 교육지원 | 12 | 3.7% |
| | 제6장 스마트정보 | 4 | 1.2% |
| 제5편 기획경제 | 제1장 기획예산 (제1절 기획) | 10 | 3.1% |
| | 제1장 기획예산 (제2절 예산) | 6 | 1.9% |
| | 제1장 기획예산 (제3절 법무) | 3 | 0.9% |

| 편 | 장 | 개수 | 비중 |
|----------|-------------------|-----|--------|
| | 제1장 기획예산 (제4절 협치) | 2 | 0.6% |
| | 제2장 지역경제 | 13 | 4.0% |
| | 제3장 일자리정책 | 7 | 2.2% |
| | 제4장 재무 | 3 | 0.9% |
| | 제5장 세무 | 7 | 2.2% |
| 제6편 복지 | 제1장 복지정책 | 12 | 3.7% |
| | 제2장 사회복지장애인 | 11 | 3.4% |
| | 제3장 어르신복지 | 12 | 3.7% |
| | 제4장 가정복지 | 14 | 4.3% |
| | 제5장 아동청년 | 21 | 6.5% |
| 제7편 안전환경 | 제1장 도시안전 | 14 | 4.3% |
| | 제2장 가로경관 | 2 | 0.6% |
| | 제3장 청소 | 8 | 2.5% |
| | 제4장 환경 | 10 | 3.1% |
| | 제5장 공원녹지 | 4 | 1.2% |
| 제8편 미래도시 | 제1장 주택 | 4 | 1.2% |
| | 제2장 도시계획 | 1 | 0.3% |
| | 제3장 도시재생 | 2 | 0.6% |
| | 제4장 건축 | 2 | 0.6% |
| | 제5장 부동산정보 | 2 | 0.6% |
| 제9편 교통건설 | 제1장 교통 | 11 | 3.4% |
| | 제2장 도로 | 4 | 1.2% |
| | 제3장 치수 | 1 | 0.3% |
| 제10편 보건소 | 제1장 보건정책 | 8 | 2.5% |
| | 제2장 보건위생 | 3 | 0.9% |
| | 제3장 보건의료 | 8 | 2.5% |
| | 제4장 건강관리 | 10 | 3.1% |
| 제11편 동행정 | 제1장 행정조직 | 3 | 0.9% |
| | 제2장 주민관리 | 3 | 0.9% |
| 합계 | | 323 | 100.0% |

- 광진구 조례는 편장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되어 있어 편의 구성과 유사한 개수를 나타내고 있음
- 국별로 보면 ‘행정국’이 75개로 23.2%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이어 ‘복지국’ 70개(21.7%), ‘기획경제국’ 51개(15.8%) 순이었음
- 광진구 조례를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가 24개(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획예산과’와 ‘아동청년과’가 21개(6.5%), ‘의회사무국’ 20개(6.2%), ‘총무과’ 18개(5.6%) 순이었음
- 장의 구성이 부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조례의 부서별 현황도 장의 구성과 유사한 숫자와 비중을 나타냄

[표 5] 광진구 조례의 부서별 현황

| 부서명 | 개수 | 비중 |
|--------------|----|------|
| 행정국 자치행정과 | 24 | 7.4% |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21 | 6.5% |
| 복지국 아동청년과 | 21 | 6.5% |
| 의회사무국 | 20 | 6.2% |
| 행정국 총무과 | 18 | 5.6% |
| 복지국 가정복지과 | 14 | 4.3% |
|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 | 14 | 4.3% |
| 행정국 문화체육과 | 14 | 4.3% |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 13 | 4.0% |
| 복지국 복지정책과 | 12 | 3.7% |
|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12 | 3.7% |
| 행정국 교육지원과 | 12 | 3.7% |
|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11 | 3.4% |
| 감사담당관 | 10 | 3.1% |
| 보건소 건강관리과 | 10 | 3.1% |
| 안전환경국 환경과 | 10 | 3.1% |
| 보건소 보건의료과 | 9 | 2.8% |

| 부서명 | 개수 | 비중 |
|--------------|------------|---------------|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8 | 2.5% |
| 안전환경국 청소과 | 8 | 2.5% |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7 | 2.2% |
| 보건소 보건정책과 | 7 | 2.2% |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6 | 1.9% |
| 교통건설국 도로과 | 4 | 1.2% |
| 미래도시국 주택과 | 4 | 1.2% |
|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 | 4 | 1.2% |
| 행정국 스마트정보과 | 4 | 1.2% |
|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 3 | 0.9% |
| 기획경제국 재무과 | 3 | 0.9% |
| 보건소 보건위생과 | 3 | 0.9% |
| 행정국 민원여권과 | 3 | 0.9% |
| 홍보담당관 | 3 | 0.9% |
| 미래도시국 건축과 | 2 | 0.6% |
| 미래도시국 도시재생과 | 2 | 0.6% |
| 미래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2 | 0.6% |
| 안전환경국 가로경관과 | 2 | 0.6% |
| 교통건설국 치수과 | 1 | 0.3% |
| 기획경제국 세무2과 | 1 | 0.3% |
|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 1 | 0.3% |
| 합계 | 323 | 100.0% |

2. 필수조례 정비현황 및 분석

□ 법령개정으로 인한 제도 개선 효과 및 법령 집행 공백 최소화

- 필수조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제정되는 임의조례와 달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조례를 의미함
- 필수조례 정비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면 됨

[표 6] 필수조례 정비 예시

| 공공디자인법 |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
| <p>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p> <p>③ ④ 생략</p> <p>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p>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 8.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p> |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법제처는 자치단체의 필수조례 정비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합동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를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을 선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음
- 법령의 개정 취지에 따른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법령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는 조례의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각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제도 개선 효과와 법령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 필수조례 정비 방법

[그림 1] 광진구 필수조례 현황

| 법령명 | 법령조문 | 공포일 | 시행일 | 지자체명 | 조례명 | 조문 | 공포일 | 시행일 |
|------------------------|--------------------------|---------------|---------------|------|-------------------------------|-----|---------------|---------------|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2016. 11. 22. | 2016. 11. 30. |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전체 | 2009. 4. 7. | 2009. 4. 7. |
| 건축물관리법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2022. 2. 3. | 2022. 8. 4. | 광진구 | | | | |
| 건축물관리법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2022. 2. 3. | 2022. 8. 4. | 광진구 | | | | |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2020. 4. 28. | 2020. 5. 1. |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3조 | 2021. 10. 29. | 2021. 10. 29. |
| 경관법 |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2016. 1. 6. | 2016. 7. 7. | 광진구 | | | | |
| 경관법 |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2016. 1. 6. | 2016. 7. 7. | 광진구 | | | | |
| 경관법 시행령 | 제16조(경관심정의 승계자) | 2017. 7. 26. | 2017. 7. 26. | 광진구 | | |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11조(고향사랑기부금의 설치 등) | 2021. 10. 19. | 2023. 1. 1. | 광진구 |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91조(지명의 결정) | 2017. 10. 24. | 2017. 10. 24. |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전체 | 2010. 3. 31. | 2010. 3. 31.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 2016. 2. 3. | 2016. 8. 4. | 광진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6조 | 2021. 3. 4. | 2021. 3. 4. |

[표 기] 광진구 필수조례 정비 미개선 현황

| 법령명 | 법령조문 | 공포일 | 시행일 |
|--------|------------------|------------|------------|
| 건축물관리법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2022. 2. 3 | 2022. 8. 4 |

| 법령명 | 법령조문 | 공포일 | 시행일 |
|----------------------------|---------------------------------|--------------|--------------|
| 건축물관리법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2022. 2. 3 | 2022. 8. 4 |
| 경관법 |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2016. 1. 6 | 2016. 7. 7 |
| 경관법 |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2016. 1. 6 | 2016. 7. 7 |
| 경관법 시행령 |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자) | 2017. 7. 26 | 2017. 7. 26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 2021. 10. 19 | 2023. 1. 1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2021. 11. 30 | 2022. 3. 1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 2022. 2. 28 | 2022. 3. 1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 2021. 4. 20 | 2022. 4. 21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2022. 4. 20 | 2023. 1. 1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2022. 4. 20 | 2023. 1. 1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 2016. 3. 29 | 2017. 3. 30 |
| 국민영양관리법 |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 2015. 12. 29 | 2015. 12. 29 |
| 국민체육진흥법 |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 2022. 2. 3 | 2022. 8. 1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 2017. 9. 19 | 2017. 9. 22 |
| 도서관법 |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 2021. 12. 7 | 2022. 12. 8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 2021. 12. 21 | 2022. 6. 22 |
| 식물방역법 |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 2016. 12. 2 | 2017. 12. 3 |

| 법령명 | 법령조문 | 공포일 | 시행일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36조(급식지원) | 2022. 6. 21 | 2022. 6. 22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 2017. 7. 26 | 2017. 7. 26 |
| 온천법 시행령 | 제22조(수수료) | 2021. 6. 22 | 2021. 6. 23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2018. 12. 11 | 2018. 12. 11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2018. 12. 11 | 2018. 12. 11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 2021. 10. 19 | 2022. 1. 13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제11조(이의신청 등) | 2021. 10. 19 | 2022. 1. 13 |
| 주민투표법 |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 심의회) | 2022. 4. 26 | 2022. 10. 27 |
| 주차장법 |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021. 12. 7 | 2022. 6. 8 |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2017. 7. 26 | 2017. 7. 26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 2017. 9. 5 | 2017. 9. 5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8조(시험위원 등) | 2017. 7. 26 | 2017. 7. 26 |
| 지방공무원법 |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 2017. 7. 26 | 2017. 7. 26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2021. 1. 12 | 2021. 7. 13 |
| 지방자치법 |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2021. 1. 12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 제43조(겸직 등 금지) | 2021. 1. 12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2021. 1. 12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 제53조(정례회) | 2021. 1. 12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 제54조(임사회) | 2021. 1. 12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 2021. 1. 12 | 2022. 1. 13 |

| 법령명 | 법령조문 | 공포일 | 시행일 |
|----------------------------------|----------------------------|--------------|--------------|
| 지방자치법 |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2021. 1. 12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2021. 1. 12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 2021. 12. 16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2021. 12. 16 | 2022. 1. 13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 2021. 12. 16 | 2022. 1. 13 |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 2022. 1. 4 | 2022. 7. 5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 2020. 5. 1 | 2020. 7. 2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 2022. 4. 27 | 2022. 4. 28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2017. 4. 18 | 2017. 10. 19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 2017. 1. 17 | 2017. 1. 28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 2022. 1. 25 | 2022. 1. 28 |

-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필수조례 정비현황 중 광진구의 미정비 필수조례 목록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광진구가 ‘미개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40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
- 광진구는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의 시행일 이후인 2022년 2월 8일에 개정을 했지만, 해당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정비 방법은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을 하거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을 할수 있음
 - 서초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강서구, 성북구, 강북구는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제54조(임시회),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를 살펴보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유일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의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의회 운영 기본일정과 의안의 제출·발의에 해당하는 내용만 차이가 있음
- 특히, 이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1년 12월 28일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의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필수조례의 정비에 있어 지방의회 및 집행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법제처에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광진구는 기획예산과에 의회법무팀이 있고 의회법무팀은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와 ‘자치법규시스템 운영·관리 및 통계’ 등의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천시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 및 각 부서별로 조례 정비를 더욱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8] 회기 운영 조례의 광진구의회와 이천시의회 비교

| 광진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02.08. 개정 |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2021.12.28. 개정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연간 회의일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회기) <삭제 2005.11.17.> 제3조의2(삭제) <2022.2.8.></p> <p>제4조(정례회)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회기) 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천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p>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p> |

| | |
|--|---|
| <p>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p> <p>제6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2.8.>]</p> <p>제7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p> <p>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p> | <p>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집회일로 한다.</p> <p>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p> <p>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p> <p>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p> <p>제6조의2(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p> <p>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
|--|---|

□ 필수조례는 순위는 상승했으나 정비율은 하락

- 본청을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필수조례 정비율을 확인해보면 광진구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75.8%로 18위였고 2022년에도 72.0%로 3.8%가 하락했지만, 정비율 순위는 17위로 한 단계 상승했음

○ 광진구는 2021년 조사와 2022년 조사 2년 연속으로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서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표 9] 서울시 자치구별 필수조례 정비율 비교

| 자치단체명 | 2022.07 | | 2021.08 | | 증감 | 순위변동 |
|------------------|-----------|--------------|-----------|--------------|--------------|-----------|
| | 순위 | 정비율 | 순위 | 정비율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6 | 68.0% | 26 | 66.9% | 1.1% | 0 |
| 서울특별시 강동구 | 4 | 73.9% | 4 | 80.2% | -6.3% | 0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6 | 73.8% | 10 | 77.3% | -3.5% | △4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 | 71.6% | 9 | 78.0% | -6.4% | ▼10 |
| 서울특별시 관악구 | 14 | 72.5% | 14 | 76.2% | -3.7% | 0 |
| 서울특별시 광진구 | 17 | 72.0% | 18 | 75.8% | -3.8% | △1 |
| 서울특별시 구로구 | 22 | 70.4% | 20 | 75.7% | -5.3% | ▼2 |
| 서울특별시 금천구 | 12 | 72.8% | 22 | 75.1% | -2.3% | △10 |
| 서울특별시 노원구 | 8 | 73.3% | 7 | 79.0% | -5.7% | ▼1 |
| 서울특별시 도봉구 | 5 | 73.9% | 5 | 80.1% | -6.2% | 0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0 | 72.9% | 12 | 77.3% | -4.4% | △2 |
| 서울특별시 동작구 | 3 | 74.8% | 2 | 80.7% | -5.9% | ▼1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 | 71.4% | 16 | 76.2% | -4.8% | ▼4 |
| 서울특별시 본청 | 1 | 78.9% | 1 | 82.8% | -3.9% | 0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1 | 72.9% | 8 | 78.5% | -5.6% | ▼3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 | 75.7% | 24 | 73.5% | 2.2% | △22 |
| 서울특별시 성동구 | 13 | 72.8% | 13 | 76.8% | -4.0% | 0 |
| 서울특별시 성북구 | 15 | 72.3% | 19 | 75.7% | -3.4% | △4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24 | 69.1% | 21 | 75.3% | -6.2% | ▼3 |
| 서울특별시 양천구 | 7 | 73.8% | 3 | 80.7% | -6.9% | ▼4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9 | 73.3% | 11 | 77.3% | -4.0% | △2 |
| 서울특별시 용산구 | 18 | 72.0% | 6 | 79.1% | -7.1% | ▼12 |
| 서울특별시 은평구 | 21 | 71.4% | 17 | 76.2% | -4.8% | ▼4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6 | 72.3% | 15 | 76.2% | -3.9% | ▼1 |
| 서울특별시 중구 | 23 | 69.4% | 25 | 72.9% | -3.5% | △2 |
| 서울특별시 중랑구 | 25 | 68.1% | 23 | 74.0% | -5.9% | ▼2 |

□ 필수조례 정비알림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반영 사항을 신청한 사람의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면 향후 조례의 개정에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함
- 자치법규 메뉴 내 상위법령 개정 알림을 선택하시면 현행 자치법규 위임법령 목록이 제공되고 상단에 메일링 신청

[그림 2]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상위법령 개정알림 메뉴

| 법령 | 자치법규 (조례·규칙) | 행정규칙 | 판례·해석례등 | 별표·서식 | 학칙·규정 | 그밖의 정보 |
|-------|----------------------------|--------|---------|-------|----------|--------------------------|
| 현행법령 | 현행 자치법규 | 현행행정규칙 | 판례 | 법령 | 대학 규칙/규정 | 법령용어 |
| 연혁법령 | 필수조례 정비현황 | 연혁행정규칙 | 헌재결정례 | 행정규칙 | 공사/공단 규정 | 전자법령집 |
| 근대법령 | 연혁(전체) | 최신행정규칙 | 법령해석례 | 자치법규 | | 법령웹린더 |
| 외국어번역 | 입법예고 | | 행정심판례 | | | 법률명약칭 |
| 최신법령 | 최신자치법규 | | | | | FAQ |
| 조약 | 이경제시사례 상위법령 개정알림 | | | | | 사용방법 개선의견 법령효력/저작권 |

- ‘메일링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후에 개인 이메일을 기입하고 정기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중 자치법규 위임 개정사항을 신청자의 메일로 해당 법령, 조문, 개정일자, 시행일자, 주요 개정내용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제공

[그림 3] 실제 개정정보 메일링 수신 화면



(2022.10.3. ~ 2022.10.9.)

| 법령명 | 조문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5조 | 2022.10.04. | 2023.04.05. |
| * 주요 개정내용 | | | |
| 중점 [제7항] 규정한 사항 외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청구심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 | |
| 개정 [제8항] 조문이동 | | | |

IV. 우선정비 조례 현황 및 개정

1. 우선정비 조례 현황 및 분석

1) 분석 기준

□ 제개정일 기준으로 우선정비 대상 조례 선정

- 광진구 자치법규 중 조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 전체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우선 정비대상 조례 중에서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할 내용을 파악하였음

□ 7개의 정비 기준을 적용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이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위법령 법령 재개정에 맞춰 조항을 변경
-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사항을 조례에서 불허하는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위법령 위반 조례의 개정
-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확인
-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명무실화된 조례인지 검토
- 사업종료, 재단 해산, 특별회계 폐지, 위원회의 미구성 등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이 존재하는지 확인
- 알기 쉬운 용어, 일본식 한자 남용, 법률 제명 띄어쓰기 등 쉬운 용어로의 조례의 조문을 정비
- 타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가 충분히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2) 우선정비 조례 현황

□ 정비된 지 10년 이상 조례는 20개, 4년 이상 조례는 171개

○ 전체 323개의 조례 중에서 2022년 6월 이전에 제개정된 조례는 295개로 전체 조례 중 91.3%로 나타남

- 295개 중에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제개정된 조례는 24개이며 2021년은 99개, 2020년은 55개, 2019년은 43개, 2018년 19개, 2017년은 18개, 2016년은 8개, 2015년은 7개, 2014년과 2013년은 각 1개, 2012년은 2개, 2011년은 4개, 2010년 이전은 14개로 나타남

[표 10] 광진구 조례 제개정 년도 현황

| 기간 | 개수 | 비중 |
|-----------|------------|---------------|
| 2010 이전 | 14 | 4.7% |
| 2011 | 4 | 1.4% |
| 2012 | 2 | 0.7% |
| 2013 | 1 | 0.3% |
| 2014 | 1 | 0.3% |
| 2015 | 7 | 2.4% |
| 2016 | 8 | 2.7% |
| 2017 | 18 | 6.1% |
| 2018 | 19 | 6.4% |
| 2019 | 43 | 14.6% |
| 2020 | 55 | 18.6% |
| 2021 | 99 | 33.6% |
| 2022.6 이전 | 24 | 8.1% |
| 합계 | 295 | 100.0% |

○ 제개정된 지 가장 오래된 조례의 목록 20개는 다음과 같으며 제개정된 지 가장 오래된 조례로는 「광진구민의 날 조례」가 1995년 12월 02일에 제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음

[표 11] 광진구 제개정된지 오래된 조례 목록

| 제명 | 소관부서 | 제개정일 |
|--------------------------------------|--------------|-------------|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1995.12.02. |
|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1998.11.13.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감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2003.03.31.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 보건소 보건정책과 | 2006.10.19.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2008.05.08.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2008.05.08.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2008.05.08.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2008.08.14.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 2009.02.18.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2009.06.15.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교통건설국 도로과 | 2009.10.09.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 | 보건소 보건의료과 | 2010.02.08.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복지국 가정복지과 | 2010.03.31.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행정국 교육지원과 | 2010.12.27.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복지국 아동청년과 | 2011.02.11. |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의회사무국 | 2011.07.21.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2011.07.21.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2011.12.22.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서비스현장 조례 | 행정국 총무과 | 2012.07.23. |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국 자치행정과 | 2012.11.23. |

2. 우선정비 조례 개정방안 제시

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적용

□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하고 복잡한 표현 지양

[그림 4] 필수정비 대상 일본식 한자어 목록

| 용어 | 한자 | 순화어 | 용어 | 한자 | 순화어 |
|-------------|-----|---|------|-----|-------------------|
| 가도 | 假道 | 임시도로 | 구근 | 球根 | 구근(알뿌리) |
| 가료 | 加療 | 치료 | 구배 | 勾配 | 경사 |
| 가식 | 假植 | 임시식재 | 구좌 | 口座 | 계좌 |
| 가필 | 加筆 | 고쳐 씀 | 굴삭기 | 掘削機 | 굴착기 |
| 감안 | 勘案 | 고려(하다) | 납골당 | 納骨堂 | 봉안당 |
| 갑상선 | 甲状腺 | 갑상샘 | 납득 | 納得 | 수긍(하다), 받아들이다 |
| 개호 | 介護 | 간병 | 노임 | 勞賃 | 임금 |
| 거래선 | 去來先 | 거래처 | 녹비 | 綠肥 | 푼거름 |
| 간정 | 鑑定 | 잠금장치 | 대합실 | 待合室 | 맞이방, 대기실 |
| 계기하다 | 掲記 | 규정하다 | 두개골 | 頭蓋骨 | 머리뼈 |
| 견습 | 見習 | 수습 | 마대 | 麻袋 | 포대, 자루 |
| 계리 | 計理 | 회계처리 | 명기하다 | 明記 | 명확하게 적다, 분명히 기록하다 |
| 계출 | 届出 | 신고, 제출 | 명찰 | 名札 | 이름표 |
| 고리 | 高利 | 고금리 | 명하다 | 命 | 처분을 하다, 명하다 |
| 고아원 | 孤兒院 | 보육원 | 미강 | 米糠 | 쌀겨 |
| 곤색 | 紺色 | 감색 | 미분 | 未拂 | 미지급 |
| 공란 | 空欄 | 빈칸 | 부락 | 部落 | 마을 |
| 공하다 | 供 | 제공하다, 쓰이다, 사용되다 | 분비선 | 分泌腺 | 분비샘 |
| 관능/관능 검사 | 官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 • 감각활용검사 • 감각기관활용검사 | 불입 | 拂入 | 납입 |
| | | | 불하 | 拂下 | 매각 |
| | | | 빙점 | 氷點 | 어는점 |
| | | | 사리 | 砂利 | 자갈 |
| | | | 사찰 | 査察 | 조사 |
| 시건 | 施鍵 | 잠금 | | | |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와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도 정비하고 있음

- 일본식 한자어는 통상,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표기한 것

인데 일본어는 한자를 음독(音讀)하거나 훈독(訓讀)하는데,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우리의 한자음 그대로 사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되었음

- 일본식 한자어는 법령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일본식 한자어라도 바꾸어 사용할 만한 우리말을 찾기 어렵거나 우리말이 법령문에서의 원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대로 사용해도 됨

□ 일본식 한자어의 예시 및 개정 방향

-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조례의 조문들을 변경하였음
 - 조사 결과 642건의 조례 중에서 202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발견되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제3항에서도 쉬운 우리말로 자치법규의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 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 있는 시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쉬우면서 뚜렷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여야 한다.

- 강동구, 용산구처럼 광진구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용어의 명확성과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13]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용어사용) 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 권위적인 단어,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의 순화

-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표 14] 국어기본법 내 공문서 작성 규정

| |
|--|
| <p>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작성한 공문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등의 한글 사용,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 중에서 어려운 한자어, 권위적인 단어, 일본식 한자어 등을 계속 수정했음
- 최근인 2022년 10월에 서울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15개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여 12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을 하였음

[표 15] 정비대상 15개 선정용어 목록

| 용어 | 정비안 | 용어 | 정비안 | 용어 | 정비안 |
|----|---------|------|-------|------|-------|
| 구거 | 도랑 | 강사료 | 강의료 | 용이하게 | 쉽게 |
| 개폐 | 개정·폐지 | 통할 | 총괄 | 회무 | 사무 |
| 부의 | 회의에 부치다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 수발 | 접수·발송 |
| 절사 | 버리다 | 허위 | 거짓 | 납골 | 봉안 |
| 감안 | 고려 | 입회 | 참관 | 쌍방 | 양쪽 |

- 예를 들어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뜻의 ‘통할(統轄)’은 권위적인 어감으로 지휘 통솔의 목적이 강한 조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상적인 표현인 ‘총괄’로 바꾸도록 하고 있음

- 광진구 조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례가 ‘총괄’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통할’로 사용하는 조례가 6개가 있음
- 「광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등 대다수의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한 조문에 ‘통할’이라는 표현이 아닌 ‘총괄’이라고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표 16] ‘총괄’ 로 표현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 조례명 | 조문 | 제개정일 |
|--------------------------------|---|------------|
|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2020.10.28 |
| 광진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2018.09.21 |
|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2019.12.30 |
| 광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 2020.09.10 |
|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 2010.12.27 |
|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 2020.10.28 |

-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구 본청의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면 ‘총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등은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광진구를 포함하여 용산구, 중구, 도봉구, 은평구, 동대문구, 구로구, 양천구만 해당 조례에서 ‘통할’이라고 규정하고 그 외 자치단체는 모두 ‘총괄’로 규정하고 있음

[표 17] 통말로 규정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비교

|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 제12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 제16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이외에도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무’의 ‘사무’로의 순화, ‘입회’의 ‘참관’으로의 순화, ‘잔임기간’의 ‘남은 임기’로의 순화, ‘감안’의 ‘고려’로의 순화 등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다음과 같음

- 광진구 조례 중 ‘고려하여’로 조문을 작성한 조례는 82개로 대부분 조례는 ‘감안’이 아닌 ‘고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잔임기간’이 아닌 ‘남은 임기’ 또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조례의 조문을 구성한 조례는 41개로 확인됨

[표 18]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 순화어 | 조례명 | 조문 | 제개정일 |
|--------------|-------------------------|--|------------|
| 회무 > 사무 | 광진구민대상 조례 | 제6조(위원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 한다. | 2016.03.09 |
| 입회 > 참관 |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1조(관람료 등) ③ 남은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이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2022.02.25 |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2020.10.28 |

| 순화어 | 조례명 | 조문 | 제개정일 |
|---------|--------------------------------|---|------------|
| |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② <u>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 2022.02.08 |
| |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 2006.10.19 |
| | 광진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위원의 임기)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 2021.10.29 |
| | 광진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임기)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 2018.09.21 |
| | 광진구 도시계획 조례 | 제4조(구성) ⑤ 공무원이 아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광진구의회의원인위원의 임기중 구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위원임기로 하며,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 2019.12.30 |
| |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 | 2022.10.17 |
| 감안 > 고려 |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7조(운영)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u>감안하여</u>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 2021.10.29 |

| 순화어 | 조례명 | 조문 | 제개정일 |
|-----|----------------------------------|---|------------|
| | | <p>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⑧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
| |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4조(근무시간 등)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22.02.08 |
| |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 2021.10.29 |
| | 광진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전검토) 구청장은 자매결연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2019.04.01 |
| |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 제32조(평가기준) 청소년시설의 | 2021.10.29 |

| 순화어 | 조례명 | 조문 | 제개정일 |
|-----|--------------------------------------|--|------------|
| |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평가는 다음 각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 광진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20.10.28 |
| | 광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21.10.29 |
| | 광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광진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9.10.14 |
| |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6조(위탁기간) ② 재계약기간 만료후에 다시 재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2월 말일로 할 수 있다. | 2022.04.04 |

2) 현행 조례의 내용적 보완 필요성 제안

가) 광진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필요

-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이고 반려인은 1,448만 명이라고 함
- 자치단체들은 증가하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광진구도 어린이 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고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을 돕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기획경제국의 분장 업무로 ‘가축방역,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동물보호 조례」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조문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표 19] 광진구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제안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
| 신설 | 제00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 제4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장에게 |

| 현행 | 개정안 |
|--|--|
| <p>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 <p>제출하여야한다.</p> <p>②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p>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

- 서대문구는 조례명에 동물복지를 명기하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표 20] 서대문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중 반려동물 관련 조항

| |
|---|
| <p>제16조(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p> <p>제17조(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및 지원)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문화 형성을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 2. 긴급보호동물의 인수, 보호, 분양 및 법 제22조에 따른 처리 |
|---|

3.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4. 동물보호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5. 반려동물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6.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7.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8.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
 9. 동물보호 구민운동의 지원
 10.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
 11.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③ 긴급보호동물의 인수는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구로 인계한 경우에 한한다.
- ④ 구청장은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및 동물복지 관련 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은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에 관해 조례에서 규정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1]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중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조항

- 제3조(동물 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 제9조(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구청장은 생명존중 의식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문화행사 등
 2. 반려동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3. 펫티켓 등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 이외에도 금천구는 동물보호 조례에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2]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 지정 조문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등) 구청장은 매년 10월 4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 애호·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연관 조례

- 「서울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서울시 본청 및 노원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등이 있음

□ 소관부서 :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나)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 주최 및 주관이 불명확 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방의회 및 행정에서 관련한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조례에 안전한 행사를 위한 방안을 담을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입법 예고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체로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주최·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책임과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하여 규정 △옥외행사 경로·통행로에 군중 밀집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하도록 규정 △옥외행사에 긴급 시에 재난 문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 △안전점검 및 경찰서, 의료기관 등 안전관리 지원요청 △긴급안전점검과 조치 및 주최자에 대한 권고 △안전관리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포함되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
- 최근 입법 예고된 충북 청주시와 충남 공주시의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주시는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시(산하 출자출연기관 포함) 주관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와 주관이 불명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도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주체가 불명확한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외에도 행사 시 위험 요소 발생과 시설사용 제한 및 행사금지 등의 재난 문자를 자치단체장이 발송하도록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3] 충북 청주시 옥외행사 조례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신설〉</p> | <p>제4조(책무) 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또는 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나 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p>⑤ 주최·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할 경우 시장은 행사장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p> |
| <p>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8호 생략 9호 〈신설〉</p> | <p>9.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통행로 등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p> |
| <p>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 ④ 생략 ⑤ 〈신설〉</p> | <p>⑤ 제4항에 따라 위험요소 발생과 시설사용제한 및 행사금지 시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p> |
| <p>제10조(준수사항 권고) ① (생략)</p> | <p>②</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신설〉</p> | <p>-----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4. 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 공주시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화하고 더불어 주최 주관이 불명확하게 자발적으로 시민이 모이는 행사도 옥외행사(최소 참여 인원 500명 이상)로 규정했음

[표 24] 공주시 옥외행사 조례 중 정의 조문 개정내용

|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p> <p>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p> <p>나. 시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p> <p>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p> |
|---|

- 시(출자·출연기관 행사 포함) 주관 행사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행사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5] 공주시 옥외행사 조례 중 관계기관 협업에 대한 개정 내용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그 외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26] 공주시 옥외행사 조례 중 예산지원에 관한 개정내용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를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주민자치 관련 조례의 통합 필요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해 기존 동주민센터의 자치회관 운영을 하던 주민자치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통합 전환하는 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와 동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성격적 유사도가 높아 별도 조례의 제정보다 통합하여 그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 서울 강서구를 포함하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등 다수의 자치구가 통합하여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 광진구도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해 기존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례 통합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적용례 가능

- 다만, 조례의 통합으로 인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까지 실질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금천구, 도봉구 등 통합하여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구들은 부칙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까지 사항

을 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표 27] 서울 금천구 주민자치회 조례 중 유예 규정

제3조(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

- 또한 도봉구는 해당 조례를 2020년 12월에 통합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음

[표 28] 서울 도봉구 주민자치회 조례 중 적용례

제4조(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단체 위원 구성 비율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충족하도록 한다.

- 성북구와 양천구는, 은평구는 별도의 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합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도록 부칙을 두었음

[표 29] 서울 성북구 주민자치회 조례 중 경과조치

제5조(주민자치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날부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 근거법명의 변경 필요

- 또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근거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8년 3월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되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근거법령명을 변경해야 함

라)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

□ 에너지빈곤층의 소외 없는 복지정책 포함 필요

-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항을 보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표 30] 에너지법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 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부터 제16조의7(과징금의 처분)까지 에너지복지 정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표 31] 에너지법 내 에너지복지 정책 규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에너지공급자,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에너지 공급 현황
2. 에너지 이용 현황
3.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수급 자격 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에너지이용권을 제시받은 에너지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에너지복지는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폭한·폭염 질환 및 사망사고의 증가와 에너지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제6조(구민의 권리)에서 포괄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음
- 인천광역시 동구는 해당 조례의 기본이념에 구의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에 있어도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표 32] 인천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복지 정의

제2조(기본이념) ⑥ 구는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④ 구청장은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④ 구청장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나 지역에 연료비 지원,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서울 강북구, 은평구, 노원구, 금천구, 양천구, 송파구도 구의 책무에 에너지 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하도록 하고 에너지 계획에 에너지빈곤층 지원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표 33] 서울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과 고효율 기자재 이용 안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서울 중구, 강동구, 동대문구, 중랑구는 ‘에너지 백서’에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을 담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4] 서울 강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 백서 포함 사항

제30조(에너지 백서) ①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현황
 4.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

- 서울 서대문구는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추진방안을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35] 서대문구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복지사업 규정 조문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제10조(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구의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 사회문제 해결형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 및 육성
 5.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에 서울 서대문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에너지 복지정책 관련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복지정책인 에너지복지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폐지법령 준용 조례 개정

□ 조례의 체계정당성 확보 필요

- 법률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효용성이 낮아지거나 시대적 환경변화로 인해 역할이 전환되면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고 있음
-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최신 법령 소식에 '폐지법령'을 공개하고 있음

[그림 5]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폐지법령 목록

정부정책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부입법 지원센터 로그인

• 최신 법령소식 • 입법 기준/편람

| 폐지법령 | 소관부처 | 전체 | 법령명 | 법령명 검색 | 검색 |
|--|--------------|--------|---------|--------------|-----------------|
| 전체 5,715건 (1 / 572) | | | | | |
| | | | | | 원형 법령 시행예정 법령 |
| 법령명 | 폐지일자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 교통에너지환경법 | 2025. 1. 1. | 법률 | 제9346호 | 2009. 1. 30. | |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41호 | 2022. 10. 4. | |
| 복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31호 | 2022. 10. 4. | |
|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2022. 10. 4. | 대통령령 | 제32940호 | 2022. 10. 4. |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2022. 9. 10. | 법무부령 | 제1034호 | 2022. 9. 8. | |
| 의약품유통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 2022. 8. 30. | 대통령령 | 제32889호 | 2022. 8. 30. |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2022. 8. 26. | 보건복지부령 | 제902호 | 2022. 8. 26. | |
|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 2022. 8. 16. | 보건복지부령 | 제901호 | 2022. 8. 16. | |
|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 2022. 7. 5. | 대통령령 | 제32764호 | 2022. 7. 4. | |
| 지속가능발전법 | 2022. 7. 5. | 법률 | 제18708호 | 2022. 1. 4. | |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이 있어 기본원칙으로는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의 범위 내', '법의 일반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전제와 균형의 원칙' 5가지의 원칙이 적용됨
- 이 중 '법의 일반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있음
- 각각의 원칙들은 자치법규의 구조나 내용이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규범에 대한 신뢰와 명확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위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조항, 조문들이 모순되거나 어긋남이 없이 정확해야 함
- 즉, 법률의 폐지로 인해 기존에 준용하고 있던 조례의 경우 해당 법령이 아닌 관계된 타 법령으로 개정해야 조례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지방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 준용 필요

- 「광진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협의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1항 제3호에 근거법령인 「예산회계법」은 2007년 1월에 「국가회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음
- 「국가회계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에 자치단체인 광진구는 「지방회계법」의 준용이 정확한 근거법령이 맞음
- 이에 따라 「예산회계법」 및 「국가회계법」은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으로 준용하도록 개정해야 함
- 서울 분청을 포함해 중구, 용산구, 관악구,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남구, 종로구, 강동구 등 다수의 자치단체가 해당 조항을 정비하였음

[표 36] 서울 본청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준용 법령

제3조(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30>

1. ~ 2. 생략

3. 예산·경리 또는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4) 그 외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

□ **실질적 사업 추진의 점검 필요**

-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등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경우 해당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 광진구 조례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모두 33개가 있음
- 특히, 정책 추진의 근거인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조례 제정의 목적이 구현될 수 있음

[표 37] 조례 규정사항 준수 점검 필요 조례 목록

| 조례명 | 조문 | 제개정일 |
|-------------------|--|------------|
|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학교,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건강도시 단위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및 | 2006.10.19 |

| 조례명 | 조문 | 제개정일 |
|--|---|-------------------|
| | <p>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 <p>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p> | <p>제5조(개선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u>모두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개선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u>조례에 따른 최초의 개선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u></p> | <p>2009.10.09</p> |
|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 *전체 조례 목록은 별도 첨부</p> | | |

V. 광진구 신규조례 제정 제안

1. 우수조례 선정

1) 우수조례 선정 사례 분석

□ 활발해진 우수조례 선정

-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면서 조례입법 성과가 축적되어 행정안전부, 법제처, 서울특별시, 정당 등 다양한 기관과 학회 등에서 '우수조례'에 대한 평가와 시상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6] 행정안전부 우수조례 선정 홍보물

The poster features a central illustration of a diverse group of people, including children and adults, with their arms raised in celebration. To the right of the illustration, the text reads: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우수사례 선정 - 대국민 온라인 심사 -' (Local Council 30th Anniversary Outstanding Cases Selection - National Online Review -). Below this, it says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세요' (Please select outstanding cases of local councils with the hands of our citizens). At the bottom, there is a blue box contain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참여기간' (Participation Period) 2021.09.24.~ 2021.10.03., '참여방법' (Participation Method) 우수 사례 30건 중 5건 선택 (Select 5 out of 30 outstanding cases), and '참여대상' (Participation Target)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 (All Korean citizens (Gwanghwamoon 1st, www.gwanghwamoon1st.go.kr)). A note below states '*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100명)을 드립니다.' (We will give mobile gift certificates (100 people) to some of the participants through a lottery.). The bottom right corner features the logo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우수사례 선정
- 대국민 온라인 심사 -**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선정해주세요

참여기간 2021.09.24.~ 2021.10.03.
참여방법 우수 사례 30건 중 5건 선택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광화문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
*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100명)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가) 광역자치단체의 우수조례 선정 사례

□ 서울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장 사례 분석

- 서울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각각 지역주민의 삶을 바꾼 조례를 선정했음
- 서울특별시는 선도성, 효과성, 역사성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는 창의성, 효과성, 합법성의 기준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음

[표 38] 자치단체 우수조례 선정 기준

| 서울특별시의회 | | 광주광역시의회 | |
|---------|---------------------------------------|---------|---|
| 선도성 | 법의 제정을 이끌어냈거나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는가? | 창의성 | 전국 최초 조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인가? |
| 효과성 | 조례 제정으로 예산절감이 되었거나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렸는가? | 효과성 | 조례시행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주민의 삶 개선정도가 큰가? |
| 역사성 | 서울시의회 30년의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했는가? | 합법성 | 주민·시민단체의 참여가능성이 높은가?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과도한 침해가 되었는가? |

- 서울시민들이 선정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살펴보면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3%로 1위로 선정되었고 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1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11.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1.6%) 순이었음

[표 39] 서울시민 선정 서울시의회 우수조례 30선 중 상위 10개

| 순위 | 조례명 | 투표수 (명) | 비율 (%) | 광진구 비교 |
|----|----------------------------|---------|--------|---------|
| 1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54 | 14.3 | 동일조례 존재 |
| 2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004 | 14.0 | 동일조례 존재 |
| 3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1,679 | 11.7 | 유사조례 |

| 순위 | 조례명 | 투표수 (명) | 비율 (%) | 광진구 비교 |
|----|--|------------|-----------|------------|
| | | | | 존재 |
| 4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664 | 11.6 | 동일조례 존재 |
| 5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 1,504 | 10.5 | |
| 6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 1,389 | 9.7 | |
| 7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156 | 8.0 | |
| 8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1,054 | 7.4 | |
| 9 |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 993 | 7.0 | |
| 10 |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 828 | 5.8 | 유사조례 존재 |

○ 광주광역시의 우수조례 선정내용을 살펴보면 각 위원회별로 5개씩 20개의
조례를 선정했음

[표 40] 광주시민 선정 광주시의회 우수조례 20선

| 구분 | 조례명 | 내용 | 광진구 비교 |
|-----------------|---|---|-----------|
| 교육 문화 위원회 | 문화콘텐츠진흥조례 |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 지원 | |
|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활성화 조례 | 지속적인 소통과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상시적 의사소통체계 구축 | |
| | 광주형일자리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 | 현장중심 직업훈련 모형을 정착·발전, 광주형일자리맞춤형 인재 육성 | |
| |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 4차 산업혁명 부흥 위한 교육환경 조성,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지원 | |
| 산업 건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 | |

| 구분 | 조례명 | 내용 | 광진구 비교 |
|---------------------------------|------------------------|---|---------|
| 설 위 원 회 |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 에너지 지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복지 증진 | 동일지원 존재 |
| |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 택배노동자 필요 사항 규정, 택배노동자 부담 완화 | |
|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 기여 | 동일조례 존재 |
| | 생활임금 조례 | 적정 생활임금 기준 마련,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동일조례 존재 |
| 환 경 복 지 위 원 회 | 물순환기본 조례 | 약화된 도시 물환경회복, 건강한 물순환도시 만들기 | |
| | 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제한 조례 | 공공기관 1회용품사용 및 제공 제한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 | 유사조례 존재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여성청소년에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 | |
|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
| | 근육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육장애인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 감소,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 전국 최초 조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 |
| | 공용차량 공유 조례 | 광주광역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에 무상대여, 이동 편의 증진 | |
| |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으로 시민이용편의 도모, 공유문화 촉진 | |
| |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 재난예방 활동에 시민봉사단체 참여 활성화, 안전문화 진흥 | 유사조례 존재 |
| | 청년정책 기본 조례 |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청년 권익 증진 기여 | 동일조례 존재 |

- 이외에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 평가기준을 살펴 보면 합법성, 시행가능성, 실효성, 대응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선정했었음

나)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 2021년 법제처 선정 우수조례 목록

-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우수조례를 인증해주고 있음
-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공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고 있음

[그림 7]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우수조례 표시



- 법제처에서는 매년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등이 선정되었음

[그림 8] 대전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 | |
|-------------|---|
| 최우수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주요내용 | 탄소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책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탄소인지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
|--|--|
| <h3>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h3> <p>[시행 2021. 4. 9.]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506호, 2021. 4. 9., 제정]</p> <p style="text-align: right;">대전광역시 대덕구(에너지과), 042-608-6912</p>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 탄소감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
| <p>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

[그림 9] 서울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 | |
|--------------|--|
| 우 수 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역주민이 구에 신고하여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하도록 규정 |

| | |
|--|--|
| <h3>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h3> <p>[시행 2021. 4. 28.]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579호, 2021. 4. 28., 제정]</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 강동구(사회복지과), 02-3425-5700</p>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강동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
| <p>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 |

[그림 10] 경기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 |
|--------------|--|
| 장 려 상 | 경기도 화성시 |
| 주요내용 | 지역공헌활동을 한 주민에게 공헌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점수를 지역화폐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헌포인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8. 1.]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811호, 2021. 7. 30., 제정]

경기도 화성시(자치행정과), 031-5189-33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공헌포인트제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헌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역에 공헌한 자에게 공헌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제6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제3호는 시민의 추천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기부 활동
 2. 정책제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 각종 시정에 참여하는 활동
 3. 그 밖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활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화성시 관내에 주소, 거소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자에게만 부여한다.

Wf

[그림 11] 광주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 | |
|--------------|---|
| 장 려 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 |
| 주요내용 | 경제적 사정 등으로 법적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송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다수 주민들과 관련된 공익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송비용의 지원을 규정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14.]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614호, 2021. 7. 14.,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법무지원과), 062-960-807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광산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Wf
[설

[그림 12] 경남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 |
|------|---|
| 장려상 | 경상남도 통영시 |
| 주요내용 | 통영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율의 증가에 이바지함 |

| | |
|--|--|
| <p>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p> <p>[시행 2022. 1. 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634호, 2021. 9. 27., 제정]</p> <p style="text-align: right;">경상남도 통영시(기획예산담당관), 055-650-3160</p>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 <p>제2조(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만 지급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 지원 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 |

2) 최근 조례 제정 특징

□ 명확한 대상층이 확정된 지원 조례 증가

- 최근 자치단체의 신규조례 제정 특징은 기후위기, 주민참여, 주택가격 상승, 인권 감수성 등 이슈에 대응한 조례가 다수 제정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포괄적인 인권 보장조례보다 경비원, 외국인 주민, 노동 등 개별 대상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인권 보장과 증진조례 제정이 확대되고 있음
- 다자녀,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인구정책 차원으로 양육비 지원하는 조례가 존재하나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기에 처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담은 조례의 제정되고 있음

□ 지역별 정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조례입법 경향 증가

-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는 수도권에서는 거주 안정을 목표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음
- 공동주택 경비원의 보호를 위한 조례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로 수도권 내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이 주로 되고 있음

2. 광진구 신규조례 제안

1) 기획행정위원회

□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 조례의 배경 및 목적

- 배달, 대리기사, 택배, 퀵서비스 등은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수단을 주로 활용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이들을 흔히 ‘이동노동자’라 함
- 이들의 노동방식은 일정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체류형’ 노동과 달리 노동력의 수요에 의해 스스로 업무공간을 정할 수 없고 수수료 방식의 임금이 지급되는 ‘호출형’ 노동임
- 체류형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정한 공간의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반해 이동노동자들은 대기 및 휴식을 노상이나 창고 등 불안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로 인해 이동노동자들은 기온 및 기상 상황에 따라 휴식의 안정성, 편의성이 매우 변이성이 높음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노동의 모습과 인식을 많이 바꾸었는데 특히 비대면으로 인해 배달 및 택배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동노동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이들의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음
- 이동노동자들은 통상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수입을 얻기에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로 봄

- 최근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등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음
- 이외에도 부정적 인식, 불안한 임금 및 고용체계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음

□ 조례의 주요내용

- 전국 최초로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를 제정한 경기를 기준으로 이동노동자의 정의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의미함
- 이동노동자의 휴식환경 개선과 문화,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일자리 등 복지 증진을 위해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 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표 41]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전문

|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p>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간의 결합 및 상생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p>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하는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 대구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외에 충남 천안, 서울 강동 등도 이용이 편리한 주요 거점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산은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지방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외에 서울 강동, 경남 창원, 전남 여수 등도 휴관 및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경기 본청, 경기 광주, 경남 김해, 대전 본청, 부산 본청, 서울 강동구, 도봉구, 전남 여수, 경남 창원, 충남 천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경북 본청, 전남 광양, 대구 본청, 부산 영도구, 충남 서산, 울산 본청, 제주 본청, 충북 청주, 경기 파주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권익보호)까지 포함하는 형식의 조례로 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이동노동자가 포함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3월과 11월에 2건이 상정되어 있음
- 해당 법률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계약 관계의 불공정, 불안정한 고용 및 소득 등 기본적인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 두 개의 법률안 모두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정의하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상 플랫폼 종사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노동관계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보호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표준계약 등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과 공제사업, 정부의 책무 등을 규율하고 있음

□ 사업현황

- 다만, 「이동노동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도 경기 부천, 광명, 안양 등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한 자치단체들이 있음
- 단순히 쉼터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의왕은 쉼터에 노무사, 심리상담사를 상주하고, 경기 안양은 동주민센터 등 31개 관공서 민원실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고, 울산 남구는 주차 문제 등으로 실내 쉼터가 이용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야외에 쉼터를 설치했음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야간노동 및 집중된 업무시간, 잦은 이동 등의 노동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용 시간이 한정적이거나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제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고 있음
- 경기 고양시는 고양노동권익센터 내에 노동자 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했으나 기존 쉼터가 건물 6층에 있고 주차시설이 여의찮아 야간에 배달 및 대리기사 등의 이용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역(화정역) 광장에 24시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컨테이너 형식의 쉼터를 조성했음

□ 조례의 의미

- 어디서 어떤 노동을 하든지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는 노동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는 점에서 중요한 권리보장 조례로 볼 수 있음
- 또한, 해당 조례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는 직종이었던 배달, 택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두게 하여 소외되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찾아낸 조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노동의 관점을 확장한 조례로는 「필수노동자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등이 있음

□ 소관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그림 13]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

□ 쉼터안내

| | |
|------------------|---|
| 休서울이동노동자 서초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54 호진빌딩 4층 • 이용시간: 월~금 18:00~06:00 • 문의: 070-5101-5431 |
| 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중구 세종대로14길 38 단암빌딩 2층 • 이용시간: 월~금 08:30~20:00 • 문의: 02-722-7214 |
| 休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마포구 양화로 73 체리스빌딩 5층 • 이용시간: 월~금 09:00~06:00 • 문의: 070-7005-5595 |
| 休서울서틀버스 노동자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 7층 •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 문의: 070-4267-6677 |
| 休서울미디어 노동자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37, 604호 • 이용시간: 월~금 09:30~18:00 • 문의: 1833-8261 |

□ 자치구 이동노동자쉼터 안내

| | |
|------------------|--|
| 강동구 이동노동자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5길 58 3층 • 이용시간: 월~금 10:00~06:00 • 문의: 02-488-7974 |
| 이동노동자 강서구 휴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강서구 마곡동 745-3 • 이용시간: 월~금 09:30~18:30 • 문의: 070-4169-1701~2 |
| 휴'서대문이동노동자 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견인차량보관소 내 • 이용시간: 월~금 11:00~19:00 • 문의: 02-396-2337 |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

□ 조례의 배경 및 목적

- 전기통신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는 매년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피해액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진화하는 기술과 교묘해진 속임수로 피해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표 42] 연도별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 구분 | 기관사칭형 발생건수 | 기관사칭형 피해액(억원) | 대출사기형 발생건수 | 대출사기형 피해액(억원) |
|------|---------------|------------------|---------------|------------------|
| 2016 | 3,384 | 541 | 13,656 | 927 |
| 2017 | 5,685 | 967 | 18,574 | 1,503 |
| 2018 | 6,221 | 1,430 | 27,911 | 2,610 |
| 2019 | 7,219 | 2,506 | 30,448 | 3,892 |
| 2020 | 7,844 | 2,144 | 23,837 | 4,856 |

출처 : 경찰청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대출 지원 등을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서민경제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시민들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수반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선량한 청년들까지 보이스피싱 운반책 등으로 가담시키고 있어 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 경찰청 및 자치단체, 기업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 지원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

□ 조례의 주요내용

- 관내 경찰서, 금융사 등과 협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시책 마련
- 특히 금융회사는 시민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홍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전문 강사 육성 지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피해방지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합 조정하고 협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와 운영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 피해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정현황 및 참고사항**

○ 서울시 자치구는 본청을 포함해 서초구, 강동구, 성북구, 구로구, 강북구, 노원구, 금천구가 제정하고 있고 전국으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60곳 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소관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다)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조례의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그림 14] 소상공인진흥재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 |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구분 | 예산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3,629백만원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7등급인 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 |

*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됨

[표 43]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제4조의14(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인 50인 미만을 근로자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
- 사업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당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주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관련법령 : 「소상공인법」, 「고용보험법」

□ 제정현황 및 참고사항

-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울산시에서는 시민 13,260명의 주민발의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 이외에도 대전 본청,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이 제정하였음

○ 경기 성남시와 서울 성동구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000(지역명)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 시민의 고용보험 가입 추진했으나 시행은 되지 못함

[표 44] 성남시 일하는 시민 조례 주요내용

정의 : 일하는 시민이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함

권리내용 : 일하는 시민의 권리

-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존중을며 차별없이 일할 권리 등
-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선할 권리 등

기본계획 수립 :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및 사업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시행 의무 및 주요사항 등
-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사업 개발 추진
- 시설 설치 운영 지원

기금 설치 :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 설치 목적, 재원 조성, 운용계획, 존속기한,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등 명시

주요 사업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 고용기회, 소득불평등, 적정 노동시간 등이 충족되는 좋은 일자리 마련

관련 지침 : 공정거래 지침

- 일하는 시민의 계약상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 지침 보급 적용

교육 : 시민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 및 교육

위원회 설치 : 노동권익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노동 권익보호 및 증진 주요 시책 심의 자문

□ 소관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2) 복지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복지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 안전환경국(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교통건설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 보건소, 광진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

□ 조례의 배경 및 목적

-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질병, 실직, 채무, 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의료, 주거, 교육, 생계지원 및 민간기관 연계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43개 자치단체 모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경우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긴급복지 지원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와 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음
-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을 보면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표 45] 긴급복지지원법 내 자치단체의 위기상황 발굴 관련 조문

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출처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그러나 제도적 결함, 담당 업무 과중, 관심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복지사각 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과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심을 받고 있음
- 해당 조례는 법제처가 주관한 ‘2021년 우수조례’ 선정 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는데 법제처는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조례라고 평가했음

□ 조례의 주요내용

- 해당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지역주민이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의된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신고된 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을 제외한 주민이 신고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함
- 포상금은 건당 3만 원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강동구 지역화폐인 ‘빚살머니’로 지급함
- 위기가구를 찾은 주민은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위기가구 찾고, 빚살머니 받고!’에서 할 수 있음
- 해당 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 해 연말까지 다섯 가구가 주민신고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음

[표 46]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 중 주요내용

| |
|--|
| <p>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p>제4조(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p> <p>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음</p> <p>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

□ 조례의 제정현황 및 주요내용

-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는 3곳의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28일 서울 강동구가 자치단체장 발의로 처음으로 제정했고 경북 상주시와 울산 중구는 해당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음
- 강동구의회는 조례안 심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해당 조례는 복지 대상 가구의 발굴을 위한 복지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이 모인 복지동아리에서 아이디어를 모은 사례라고 발언하고 있음

[표 4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1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중

| |
|--|
| <p>사회복지과장 황희주 :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돼 가지고 복지부서 직원들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한 20여 명으로 복지동아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u>그래 갖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계실 때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또 발굴하고 찾고 그런 것을 의논하는 그런 동아리인데 직원들끼리 같이 의논을 하다가 사실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통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u> 그런 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돈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u>그래도 그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u></p> |
|--|

- 경북 상주(지역화폐, 최대 30만 원)와 울산 중구(현금, 최대 15만 원)는 1인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위기가구 신고포상 조례」가 아닌 기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 서울 성동구, 동작구, 마포구, 광주 북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문에 지원 대상 발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포상 제도를 운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48] 서울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중 포상금 지급 근거

제7조(민관협력) 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으로 1인당 5만 원(최대 1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고 올해 1월에 첫 포상금이 지급했음
- 참고로 경북 상주는 올해 9월부터, 울산 중구는 10월부터 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음
- 이웃 주민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지역화폐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적절한 포상 형태로 평가할 수 있음

□ 소관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조례의 배경 및 목적

- 영유아기에는 급속하게 뇌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발달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그렇기에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재활 치료를 받도록 하여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발달지연 격차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장애아동은 10만 명인데 그 중 장애 판정을 받지 않고 치료받거나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는 아동을 포함하면 발달 치료가 필요한 ‘발달지연 아동’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고 있음
- 서울시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실시한 ‘마포구 영유아 발달실태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양육태도 분석 조사(2018)’에 따르면 아동의 20% 이상이 발달지연 상태를 보이며, 그로 인해 부모의 25.6%가 우울감 등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 마포구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자 보편적 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조기 개입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주요내용

- 마포구의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후에는 발달지연 정도를 수치화, 연령별 맞춤형 심리·언어·미술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부모 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2022년 마포구 예산서를 살펴보면 인당 25천원씩 1,800명에게 발달검사비를 지원하고 심층검사로 250천원씩 40명을 지원하는 예산이 수립되어 있음

-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에서는 보육 교직원이 영유아의 발달 지연
을 조기진단 및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계획에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
원과 협력, 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 발달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가정과 어
린이집에서 겪는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문제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영유
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조례의 제정현황**

- 2020년 9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26개
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본청을 포함해 마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발달장애인법」**

- 영유아의 발달장애에 대한 법령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법」 제4조(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자치단체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49] 발달장애인법 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
|---|
|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u>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u>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
|---|

- 또한, 제23조를 보면 발달장애의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표 50] 발달장애인법 내 조기발견을 위한 정책 추진 등 관련 조문

| |
|---|
|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u> 하여야 한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지난 11월 24일에 국회에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발달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법령의 주요 개정안을 보면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본청의 조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표 51] 발달장애인법 발달검사 시행 관련 개정안 내용

| 현행 | 개정안 |
|---|--|
|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 ----- <u>발견하기 위하여</u> ----- <u>발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u> ----- ----- |
| <신 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 -----지원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른 예방·치료를 위한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시기·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전문가의 파견 지원과 |

| 현행 | 개정안 |
|----|-----------------------------|
| | 제3항----- ----- -----. |

□ 소관부서 : 복지국 아동청년과

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배경 및 목적

-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스토킹은 개인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어 사적으로 해결하는 등 피해자 보호가 미약한 상황임
- 특히 최근에 신당역 살인 사건처럼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경찰 등에서 개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어져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로 검거된 인원이 5년 전에 비해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2] 스토킹범죄 검거 현황

| 년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06 |
|----|------|------|------|------|------|---------|
| 건수 | 358 | 434 | 580 | 481 | 545 | 2,924 |

출처 : 경찰청 출처 재가공 /2021년은 10~12월 한정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경범죄처벌법에 근거 검거인원 제외

□ 조례의 주요내용

- 경기도 본청의 조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 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청,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도록 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심리 및 법률상담, 협력사업 등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모두 지칭하는 '피해자 등'을 명시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 또한, 행정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화했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의 근거도 마련하였음
- 조례의 제정현황
- 경기도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23개 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본청을 포함해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등 11곳이 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스토킹처벌법」

[표 53] 스토킹처벌법 내 목적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